

한국 관광안내표지 가이드라인

2009. 2

목차

한국 관광안내표지 가이드라인

I. 한국 관광안내표지 기본지침

1. 가이드라인의 목적 및 범위 / 3
 - 1-1 목적 및 활용 / 3
 - 1-2 전제 / 3
 - 1-3 적용 장소 / 4
 - 1-4 적용 대상 / 4
 - 1-5 지역 관광안내체계와 통합 및 연계 / 4
 - 1-6 기타 / 4
2. 관광안내표지의 개념정의와 분류기준 및 종류 / 5
 - 2-1 관광안내표지의 개념정의 및 목적·원칙 / 5
 - 2-2 관광안내표지의 분류기준과 종류 / 6
3. 관광안내표지의 콘텐츠 구성요소 / 12
4. 관광안내표지의 안내대상 시설 / 21

II. 한국 관광안내표지 세부지침

1. 표기 / 27
 - 1-1 기본원칙 / 27
 - 1-2 표기순서 / 27
 - 1-3 표기방법 / 28
2. 공공안내 그림표지 / 31
 - 2-1 기본원칙 / 31
 - 2-2 사용방법 / 31
3. 디자인 / 34
 - 3-1 종합관광안내표지 / 34
 - 3-2 관광유도표지 / 44
 - 3-3 관광명칭표지 / 53
 - 3-4 관광해설표지 / 55
 - 3-5 기타표지 / 59
4. 제작 설치 및 관리 / 62
 - 4-1 제작 / 62
 - 4-2 설치 / 66
 - 4-3 유지관리 / 70

III. 부록

1. KSA 0901 공공안내 그림표지 / 77
2. <도로표지규정> 중 관련 규정 / 85

I. 한국 관광안내표지 기본지침

1 가이드라인의 목적 및 범위

1-1 목적 및 활용

■ 목적

- 「한국 관광안내표지 가이드라인」은 관광안내표지의 제작·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활용

-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 민간 사업자, 지역 주민이 협력해 관광안내 표지를 설치 또는 정비를 하는 데 있어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한다.
-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관광안내표지의 관리 기준을 통일하여, 자치단체 관할 도로구역이나 관광지 내부에 관광안내표지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대한 제작·설치·관리 기준으로 활용한다.
 - ▷ 도로 구간은 국토해양부의 <도로표지규정>을 기본적으로 준용한다.

1-2 전제

- 관광안내표지의 표시 면적은 한정되어 있어,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면 많은 표지가 필요하게 되거나 가독성이 악화되는 등 효과적이지 않다. 따라서 관광안내소나 관광안내지도 등 다른 관광안내 수단과 연계 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 또한 국토해양부, 문화재청, 한국도로공사, 국토유지관리청 등 유관부서와 원활한 협조 및 역할분담이 되어야 관광객에게 효과적인 관광안내가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1-3 적용 장소

- 본 가이드라인은 관광객이 관광을 하기 위해 집을 떠나 관광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도로와 보행공간에 적용된다.
 - ▷ <도로표지규정>이 적용되는 도로구간은 이를 준용한다.
 - ▷ 보행공간은 지정·비지정 관광(단)지, 관광특구, 관광명소 등의 내부 보행 공간으로 한정한다.

1-4 적용 대상

■ 이용자

- 본 가이드라인은 내·외국인 관광객 등 모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

■ 제작·설치·관리자

- 본 가이드라인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 관광안내표지를 기획, 제작, 설치 및 관리하는 모든 주체에 적용된다.

1-5 지역 관광안내체계와 통합 및 연계

- 제작·관리 주체는 지역 특성에 맞게 관광안내체계 상위 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관광안내표지, 관광안내 홍보물, 관광안내 웹사이트를 통합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 제작·관리 주체는 계획, 디자인, 실시설계, 시공 등이 상호 단절됨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정보디자인-제작이 상호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한다.

1-6 기타

- 국토해양부의 <도로표지규정>,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규칙>, 문화재청의 <문화재안내판>,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국립공원 안내사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해 이미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정·지침이 있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2 관광안내표지의 개념정의와 분류기준 및 종류

2-1 관광안내표지의 개념정의 및 목적·원칙

가. 개념정의

- ‘관광안내표지란 유·무형의 관광자원 및 주요 시설물의 위치·방향·설명·주의 및 금지 안내 등 관광객의 원활한 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표지로, 이용자와 목적물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 세계관광기구 (UNWTO)에 따르면 “관광안내표지는 정보 제공자와 수요자간의 커뮤니케이션 매체이다”라고 개념 정의를 하고 있다 (출처: UNWTO. 『*Tourism Signs & Symbols*』. 2001).
- 본 가이드라인은 UNWTO의 관광안내표지에 대한 개념을 근간으로 한다.

나. 목적 및 원칙

- 관광안내표지는 이용자에게 관광지·관광자원·관광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목적을 둔다.
- 따라서 관광안내표지는 가독성, 단순성, 통일성, 연속성이 있어야 하고, 미적이며, 환경을 배려하는 원칙에 따라서 설치되어야 한다.

원칙	내용	비고
가독성	• 문자의 크기는 읽는 위치와 거리를 감안하여 정확히 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정보·디자인
단순성	• 표지에 들어가는 정보와 디자인은 가능한 단순해야 한다.	"
통일성	• 기능적으로나 시각적으로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	"
연속성	• 표지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며, 표지와 표지 사이는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
정체성	• 지역 특성이 반영된 디자인이어야 한다.	"
심미성	• 안내표지는 해당 지역에 대한 평가요소가 되므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공해야 한다.	디자인
환경성	• 안내표지 난립, 과도한 크기로 환경을 해쳐서는 안 된다.	"

2-2 관광안내표지의 분류기준과 종류

가. 분류 기준

- 사인분야에서는 기능에 위한 분류체계를 가장 많이 따르고 있는데 본 가이드라인은 Sims (Mitzi Sims, 1991)¹⁾가 분류했던 아래와 같은 방법을 기초로 한다.
 - ▷ 종합표지 (Orientational Sign)
 - ▷ 정보표지 (Informational Sign)
 - ▷ 방향표지 (Directional Sign)
 - ▷ 확인표지 (Identificational Sign)
 - ▷ 규제표지 (Statutory 또는 Regulatory Sign)
 - ▷ 장식표지 (Ornamental Sign)
-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용자가 요구하는 정보에 따라 관광안내표지가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기준으로 관광안내표지를 분류한다.
- 우선 이용자인 관광객의 요구정보에 대응하는 표지로서 위치, 방향, 접근 방법 등을 안내하는 종합관광안내표지, 방향을 안내하는 관광유도표지, 명칭을 안내하는 관광명칭표지, 구체적인 이용방법 등을 안내하는 관광해설표지 그리고 안전, 위험, 위급, 금지 등과 같은 안전 또는 규제사항을 안내하는 기타표지로 분류한다.

표지의 종류	제공 기능
종합관광안내표지	• 지역 또는 시설의 지형, 위치 및 배치, 교통 노선 등 안내
관광유도표지	• 관광지, 자원, 시설의 방향 안내
관광명칭표지	• 관광지, 자원, 시설의 명칭 안내
관광해설표지	• 안내대상의 특징, 이용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
기타표지	• 안전, 위험, 위급, 금지, 주의사항 등 안내

1) Sims, Mitzi. *Sign Design: Graphics · Materials · Techniques*. London: Thames and Hudson Ltd. 1991. pp. 16-21.

나. 관광안내표지의 종류

■ 종합관광안내표지

- 정의: 관광객에게 관광지·관광자원·관광시설 등의 위치, 방향, 접근방법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표지이다. 종합관광안내표지는 지도 등을 이용해 종합정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 종합관광안내표지는 안내범위 및 제작주체를 기준으로 ‘광역관광안내표지’와 ‘시군구관광안내표지’, ‘관광지안내표지’로 구분한다.
 - ▷ 광역관광안내표지: 전국 또는 특별시도, 광역시도 안의 관광지·관광시설·관광자원의 위치, 방향, 접근방법을 안내하는 종합관광안내표지
 - ▷ 시군구관광안내표지: 시군구 안의 관광지·관광시설·관광자원의 위치, 방향, 접근방법을 안내하는 종합관광안내표지
 - ▷ 관광지안내표지: 해당 관광지 안의 관광시설·관광자원의 위치, 방향, 접근방법을 안내하는 종합관광안내표지
- 종합관광안내표지는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 ▷ 광역관광안내표지는 고속도로 휴게소, 역, 터미널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시군구관광안내표지는 고속도로 휴게소, 역, 터미널, 관광지 입구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관광지안내표지는 해당 관광지의 입구,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장소 (예: 광장, 휴게소, 매표소 등)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p>광역 관광안내표지</p>	
<p>시군구 관광안내표지</p>	
<p>관광지 안내표지</p>	

<종합관광안내표지 사례>

■ 관광유도표지

- 정의: 관광객에게 관광지·관광자원·관광시설의 방향을 지시하거나 이동 방향을 확인해주는 표지로서, 일반적으로 화살표와 목적지까지 이동거리 등을 표시한다. 여기에는 <도로표지규정>에 의해 도로에 설치하는 ‘차량유도표지’와 관광지 내부에 설치하는 ‘보행유도표지’가 있다.
- 관광유도표지는 도로와 보행로의 갈림길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도로에 관광유도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도로표지규정>을 준용한다.

[관광유도표지의 세분류]

세분	위치	형태	근거
차량유도표지	• 도로변 (국도/지방도로의 접도구역)	지주형	• 도로표지규정
	• 도로변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나와 다른 도로와 만나는 적절한 지점)	지주형	• 도로표지규정
보행유도표지	• 관광지 내부	지주형, 스탠드형 등	

주: 차량유도표지란, <도로표지규정집>에 의한 ‘관광지표지 406’ 을 주로 의미



<관광유도표지 사례>

■ 관광명칭표지

- 정의: 관광객에게 관광지·관광자원·관광시설의 명칭을 알리는 표지이다.
- 관광명칭표지는 이용자 입장에서 '길 찾기' 완료 여부를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므로, 안내대상 관광지·관광자원·관광시설 앞 (입구 포함)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관광명칭표지 사례>

■ 관광해설표지

- 정의: 관광객에게 관광지·관광자원·관광시설 등 안내대상의 특징과 이용 방법 등을 문자나 음성 등을 통해 설명하는 표지이다.
- 관광해설표지는 설명 대상물 앞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관광해설표지 사례>

■ 기타표지

- 기타표지는 관광객의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 위급 (생리현상을 포함한다), 금지 사항을 미리 안내하는 표지이다. 여기에는 안전표지, 위험표지, 주의표지, 금지표지, 화장실표지 등이 있다.
- 기타표지는 금지, 주의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지점이나 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표지 사례>

이상의 종합관광안내표지, 관광유도표지, 관광명칭표지, 관광해설표지, 기타표지에 대한 세분류와 용도, 기본형태, 설치장소를 종합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관광안내표지의 종류]

구분	세분류	용도	기본형태	설치장소
종합관광 안내표지	광역 관광안내표지	• 전국 또는 특별시, 광역시도에 분포하고 있는 관광지·관광시설·관광자원의 위치, 방향, 접근방법을 종합적으로 안내	스탠드, 지주 등	• 고속도로 휴게소 • 역, 터미널
	시군구 관광안내표지	• 시군구에 분포하고 있는 관광지·관광시설·관광자원의 위치, 방향, 접근방법을 종합적으로 안내	스탠드, 지주 등	• 고속도로 휴게소 • 역, 터미널 • 관광지 입구
	관광지 안내표지	• 해당 관광지 내부의 관광시설·관광자원의 위치, 방향, 접근방법을 종합적으로 안내	스탠드, 지주 등	• 관광지 입구 • 관광지 내부 집결지 (광장, 휴게소, 매표소 등)
관광유도 표지	차량유도표지	• 운전자에게 관광지·관광시설·관광자원의 방향을 안내	지주형	• 국도, 지방도의 접두구역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접속구역
	보행유도표지	• 보행자에게 관광지·관광시설·관광자원의 방향을 안내	지주형, 스탠드형 등	• 보행로 분기점 및 동선
관광명칭표지		• 관광객에게 관광지·관광시설·관광자원의 명칭을 안내	지주형, 스탠드형 등	• 안내대상 장소·시설
관광해설표지		• 관광객에게 안내대상 관광자원, 관광시설에 대한 특징과 이용방법을 자세히 설명	지주형, 스탠드형 등	• 안내대상 장소·시설
기타표지		• 관광객의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 위급, 주의, 금지 사항을 안내	지주형, 스탠드형 등	• 안전, 위험, 위급, 주의, 금지 등 필요 지점

3 관광안내표지의 콘텐츠 구성요소

가. 총괄

- 관광안내표지는 이용자가 원활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구성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아래 표 참조)

[관광안내표지별 콘텐츠 구성요소]

번호	구성요소	관광안내표지						
		종합관광안내표지			관광유도표지	관광명칭표지	관광해설표지	기타표지
		광역	시군구	관광지				
①	표지 타이틀 (예: △△시 관광안내도)	●	●	●			○	
②	안내 문자	●	●	●	●	●	●	●
③	지도 (Map)	●	●	●				
④	현재위치 (You Are Here)	△	●	●				
⑤	화살표				●			△
⑥	현 지점명칭 (예: 조계사 앞)	△	△	△	△		△	
⑦	공공안내 그림표지	○	○	○	○	○	○	○
⑧	사진	△	△	△	△	△	△	△
⑨	일러스트	△	△	△	△	△	△	△
⑩	도표						△	
⑪	색인	○	○	○				
⑫	범례	●	●	●				
⑬	축척	○	○	○				
⑭	방위	●	●	●	△			
⑮	이동 소요거리 (m)	△	△	△	○			△
⑯	문의 연락처 (1330, 안내소, 관리소)	○	○	○			○	
⑰	장애인 안내 장치	○	○	○	△	△	△	△
⑱	IT 안내 장치 *	△	△	△	△	△	△	△
⑲	관리기관 연락처	●	●	●			○	
⑳	관광지·시설 운영시간		△	○			△	
㉑	관광루트 또는 코스	△	△	△			△	

주 1: ● = 필수 ○ = 권장 △ = 선택
 주 2: *는 유비쿼터스 등 전기전자 형태를 말함

나. 종합관광안내표지의 구성요소

1) 광역관광안내표지

■ 필수 구성요소

- 표지 타이틀
- 안내문자
- 지도
- 범례
- 방위
- 관리기관 연락처 (예: '영월군청 문화관광과')

■ 권장 구성요소

- 공공안내 그림표지
- 색인
- 축척
- 문의 연락처 (예: 1330, 관광안내소, 관광시설 문의 연락처)
- 장애인 안내장치 (예: 음성 안내정보, 점자 안내)

■ 선택 구성요소

- 현재위치 (You Are Here)
- 현 지점명칭
- 사진
- 일러스트
- 이동 소요거리
- IT 안내장치 (예, LED 안내장치 등)
- 관광루트·코스

2) 시군구관광안내표지

■ 필수 구성요소

- 표지 타이틀
- 안내문자
- 지도
- 현재위치 (You Are Here)
- 범례
- 방위
- 관리기관 연락처 (예: '영월군청 문화관광과')

■ 권장 구성요소

- 공공안내 그림표지
- 색인
- 축척
- 문의 연락처 (예: 1330, 관광안내소, 관광시설 문의 연락처)
- 장애인 안내장치 (예: 음성 안내정보, 점자 안내)

■ 선택 구성요소

- 현 지점명칭
- 사진
- 일러스트
- 이동 소요거리
- IT 안내장치 (예: LED 안내장치)
- 관광지·관광시설 운영시간
- 관광루트 또는 코스

3) 관광지안내표지

■ 필수 구성요소

- 표지 타이틀
- 안내문자
- 지도
- 현재위치 (You Are Here)
- 범례
- 방위
- 관리기관 연락처 (예: '영월군청 문화관광과')

■ 권장 구성요소

- 공공안내 그림표지
- 색인
- 축척
- 문의 연락처 (예: 1330, 관광안내소, 관광시설 문의 연락처)
- 장애인 안내장치 (예: 음성 안내정보, 점자 안내)
- 관광지·관광시설 운영시간

■ 선택 구성요소

- 현 지점명칭
- 사진
- 일러스트
- 이동 소요거리
- IT 안내장치 (예: LED 안내장치)
- 관광루트 또는 코스



<종합관광안내표지 사례>

- ① 표지 타이틀 ② 지도 ③ 방위 ④ 안내문자 ⑤ 현재위치 ⑥ 색인 ⑦ 범례

다. 관광유도표지의 구성요소

■ 필수 구성요소

- 안내문자
- 화살표

▷ 단 표지판 (패널) 자체가 화살표 등 방향을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면 별도의 화살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권장 구성요소

- 공공안내 그림표지
- 이동 소요거리

■ 선택 구성요소

- 현 지점명칭

- 사진
- 일러스트
- 방위
- 장애인 안내장치 (예: 음성 안내정보, 점자 안내)
- IT 안내장치 (예: LED 안내장치)



<관광유도표지 사례>

Ⓐ 안내문자 Ⓑ 화살표 Ⓒ 이동 소요거리

라. 관광명칭표지의 구성요소

■ 필수 구성요소

- 안내문자

■ 권장 구성요소

- 공공안내 그림표지

■ 선택 구성요소

- 사진
- 일러스트
- 장애인 안내장치 (예: 음성 안내정보, 점자 안내)
- IT 안내장치 (예: LED 안내장치)



<관광명칭표지 사례>

Ⓐ 안내문자

마. 관광해설표지의 구성요소

■ 필수 구성요소

- 안내문자

■ 권장 구성요소

- 표지 타이틀
- 공공안내 그림표지
- 문의 연락처 (예: 1330, 관광안내소, 관광시설 문의 연락처)

- 관리기관 연락처 (예: '영월군청 문화관광과')

■ 선택 구성요소

- 현 지점명칭
- 사진
- 일러스트
- 도표 (예: 계절별 관찰 가능한 동물표)
- 장애인 안내장치 (예: 음성 안내정보, 점자 안내)
- IT 안내장치 (예: LED 안내장치)
- 관광지·관광시설 운영시간
- 관광루트 또는 코스



<관광해설표지 사례>

- Ⓐ 표지 타이틀 Ⓑ 안내문자 Ⓒ 사진 Ⓓ 일러스트

바. 기타표지의 구성요소

■ 필수 구성요소

- 안내문자

■ 권장 구성요소

- 공공안내 그림표지

■ 선택 구성요소

- 화살표
- 사진
- 일러스트
- 이동 소요거리 (예: '현재 지점부터 30 m 구간' 추락주의)
- 장애인 안내장치 (예: 음성 안내정보, 점자 안내)
- IT 안내장치 (예: LED 안내장치 등)



<기타표지 사례>

- Ⓐ 공공안내 그림표지 Ⓑ 안내문자

4 관광안내표지의 안내대상 시설

■ 안내대상 시설의 종류 한정

- 표시 면적의 제한, 가독성 등의 이유로 인해 관광안내표지에서 안내할 수 있는 대상시설을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이들 안내대상 시설의 유형은 관광휴양시설, 문화시설, 대규모 집객시설, 교통시설, 숙박시설, 스포츠시설, 편의시설, 이동시설, 안내시설, 안전시설, 위생시설, 종교시설 등으로 한정한다.

■ 필수적으로 안내할 시설

- 안내대상 시설 중 아래의 세 가지 시설은 필수적으로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관련법에 의한 관광(단)지, 관광특구, 국립공원, 국가지정 문화재, 세계 문화유산 등 주로 국가 이상 차원에서 지정한 관광거점 지역
 - ▷ 관광객의 출발·도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통인프라 시설(예: 역, 터미널, 공항 등)
 - ▷ 종합관광안내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관광안내소

[관광안내표지 유형별 안내대상 시설]

구분	안내대상 시설의 종류	관광안내표지						기타 표지
		종합관광안내표지			관광 유도 표지	관광 명칭 표지	관광 해설 표지	
		광역	시군	관광지				
관광 휴양 시설	• 관광(단지) (관광진흥법) *	●	●	●	●	●	●	-
	• 관광특구 (관광진흥법) *	●	●	●	●	●	●	-
	• 국립공원 (자연공원법) *	●	●	●	●	●	●	-
	• 도립, 군립공원 (자연공원법) *	△	△	△	△	△	△	-
	•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 *	●	●	●	●	●	●	-
	• 유네스코 등록 세계문화유산 *	●	●	●	●	●	●	-
	• 제1종종합휴양업 (관광진흥법) *	△	△	△	△	△	△	-
	• 제2종종합휴양업 (관광진흥법) *	△	△	△	△	△	△	-
	•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진흥법) **	△	△	△	△	△	△	-
	• 관광유람선업 (관광진흥법) **	△	△	△	△	△	△	-
	• 국제회의시설업 (관광진흥법) **	△	△	△	△	△	△	-
	• 종합유원시설업 (관광진흥법) **	△	△	△	△	△	△	-
	• 시내순환관광업 (관광진흥법) **	△	△	△	△	△	△	-
	• 관광식도업 (관광진흥법) **	△	△	△	△	△	△	-
	• 온천원보호지구 (온천법) **	△	△	△	△	△	△	-
	• 유원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	△	△	△	△	△	-
	• 1만㎡ 이상의 공원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	△	△	△	△	△	△	-
	• 근린공원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	△	△	△	△	△	△	-
	• 주제공원 중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	△	△	△	△	△	-
	•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 **	△	△	△	△	△	△	-
	•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건축물, 사적지, 명승지 **	△	△	△	△	△	△	-
	• 문화지구 (문화예술진흥법)	△	△	△	△	△	△	-
	• 개별법에 근거한 농촌체험마을 등의 체험마을**	△	△	△	△	△	△	-
• 지정 문화관광축제 행사장	△	△	△	△	△	△	-	
• 시군 자체 개발 비지정 관광지	△	△	△	△	△	△	-	
• 자연발생 관광명소 (갯벌, 늪, 산, 강, 호수 등)	△	△	△	△	△	△	-	
• 영화 또는 드라마 등 촬영장소	△	△	△	△	△	△	-	

주 1: *은 <도로표지규정>에 의한 관광지표지 설치가능 대상, **는 <도로표지규정>에 의한 시설안내표지 설치 가능 대상

주 2: ● = 필수, △ = 선택

[관광안내표지 유형별 안내대상 시설 <표 계속>]

구분	안내대상 시설의 종류	관광안내표지						
		종합관광안내표지			관광 유도 표지	관광 명칭 표지	관광 해설 표지	기타 표지
		광역	시군	관광지				
문화 시설	• 박물관·미술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	△	△	△	△	△	△	-
	•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진흥법)	△	△	△	△	△	△	-
	• 공연장 (공연법)	△	△	△	△	△	△	-
대규모 집객 시설	• 국제전시장	△	△	△	△	△	△	-
	• 국제회의장	△	△	△	△	△	△	-
	• 테마파크	△	△	△	△	△	△	-
	• 대규모 유원지	△	△	△	△	△	△	-
교통 시설	• 기차역 **	●	●	●	●	●	●	-
	• 전철역 **	●	●	●	●	●	●	-
	• 버스터미널 **	●	●	●	●	●	●	-
	• 여객터미널	●	●	●	●	●	●	-
	• 공항 **	●	●	●	●	●	●	-
	• 도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	●	●	●	●	●	-
	• 케이블카·모노레일 정차장	△	△	△	△	△	△	-
	• 시티투어버스 정류장	△	△	△	△	△	△	-
	• 공영 주차장	△	△	△	△	△	△	-
숙박 시설	• 관광호텔 (관광진흥법) **	△	△	△	△	△	△	-
	• 수상관광호텔 (관광진흥법)	△	△	△	△	△	△	-
	• 한국전통호텔 (관광진흥법)	△	△	△	△	△	△	-
	• 가족호텔 (관광진흥법)	△	△	△	△	△	△	-
	• 관광펜션 (관광진흥법)	△	△	△	△	△	△	-
	• 휴양콘도미니엄 (관광진흥법) **	△	△	△	△	△	△	-
	• 자동차야영장 (관광진흥법)	△	△	△	△	△	△	-
	• 관광공연장 (관광진흥법)	△	△	△	△	△	△	-
	• 유스호텔 (청소년지원법) **	△	△	△	△	△	△	-
	• 청소년수련원 (청소년기본법) **	△	△	△	△	△	△	-
	• 청소년야영장 (청소년기본법) **	△	△	△	△	△	△	-
스포츠 시설	• 종합경기장	△	△	△	△	△	△	-
	• 야구장, 축구장	△	△	△	△	△	△	-
	• 등록체육시설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	△	△	△	△	△	△	-

[관광안내표지 유형별 안내대상 시설 <표 계속>]

구분	안내대상 시설의 종류	관광안내표지						
		종합관광안내표지			관광 유도 표지	관광 명칭 표지	관광 해설 표지	기타 표지
		광역	시군구	관광지				
편의 시설	• 관광유희음식점업 (관광진흥법)	△	△	△	△	△	△	-
	• 외국인전용유희음식점업 (관광진흥법)	△	△	△	△	△	△	-
	• 관광식당업 (관광진흥법)	△	△	△	△	△	△	-
	• 시내순환관광업 (관광진흥법)	△	△	△	△	△	△	-
	• 관광사진업 (관광진흥법)	△	△	△	△	△	△	-
	• 관광토속주판매업 (관광진흥법)	△	△	△	△	△	△	-
이동 시설	• 관광지/시설 내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	△	△	△	△	△	-
	• LPG 주유소	△	△	△	△	△	△	-
안내 시설	• 종합관광안내소	●	●	●	●	●	●	-
	• 일반관광안내소	△	△	△	△	△	△	-
	• 간이관광안내소	△	△	△	△	△	△	-
안전 시설	• 경찰서	△	△	△	△	△	△	●
	• 종합병원	△	△	△	△	△	△	●
위생 시설	• 관광지내 공중화장실	△	△	△	△	△	△	●
종교 시설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의 사찰, 성당, 교회, 순교기념지로서 당해 시설물이 500㎡ 이상일 것 **	△	△	△	△	△	△	-

II. 한국 관광안내표지 세부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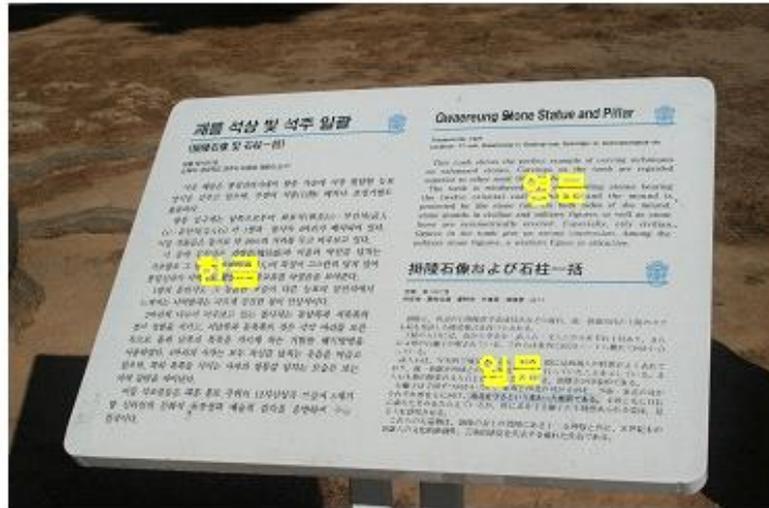
1 표기

1-1 기본원칙

- 도로에서 차량유도를 위한 관광안내표지의 경우 한글과 영어로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보행자를 위한 관광안내표지는 한글, 영어 병기가 원칙이며, 일어, 중국어 등 다국어로 표기하는 것을 권장한다. 단, 여백의 제한,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 빈도 등을 고려하여 표기하는 외국어의 종류를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다.
- 중국어 표기 시 해당 지역 또는 관광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간체 또는 번체로 표기할 수 있다.
- 표기는 가로방향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설치 장소의 협소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세로방향으로 표기할 수 있다.
- 언어 표기는 언어별 표준 표기형식 (Standard Style)에 따르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현대적인 표준 언어로 표기한다.

1-2 표기순서

- 한글→영어→기타 외국어 순서로 표기하며, 기타 외국어의 표기순서는 수교순서나 지역 관광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다.
- 표기 배치는 한글 문장을 모두 표기한 후 영어 문장을 표기하는 것으로 한다.
 - ▷ 상하로 배치할 경우: 한글을 위쪽, 영어를 아래쪽
 - ▷ 좌우로 배치할 경우: 한글을 왼쪽, 영어를 오른쪽



<관광해설표지의 본문 표기 순서>



<명동 다국어 관광유도표지 사례: 수교 순서를 기준으로 한글, 영어, 일어, 중국어 간체 순으로 표기>

1-3 표기방법

■ 고유명사

- 명칭을 외국어로 표기할 경우 고유명사는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단, 한글 또는 외국어의 지정 표기가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한다.
- ▷ 특히 문화재는 문화재청의 지정 표기를 따른다.
- 지정 표기가 없는 경우 해당 지자체의 의견에 따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약어

- 여백이 부족할 경우 한글과 외국어는 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

▷ 한글 약어 사용 예시

[원어]	[약어]
한국전력주식회사	한전

▷ 영어 약어 사용 예시

[원어]	[약어]
Station	Stn

- 표기의 연계성을 위해 <도로표지관련규정집>에 의한 약어 표기를 준용한다.
- 본문에서 약어를 표기할 경우, 관련 규정, 지침, 어법을 따르도록 한다.

■ 대문자

- 영문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영문 고유명사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한다.

■ 구두부호

- 한글과 영어 표기 시, 마침표 (.) 다음은 한 단위 이상 띄어 쓴다.
 - ▷ 예외 사례: 영문 약어표기 Ph.D. U.S.A.
- 한글과 영어 표기 시, 쉼표 (,) 다음은 한 단위 띄어 쓴다.
- 한글과 영어 표기 시, 콜론 (:)은 한국의 조사처럼 앞 문자에 붙여 쓰고 다음은 한 단위 이상 띄어 쓴다. 단, 시간표기 등은 예외다.
 - ▷ [예] 전화번호: 02-2198-5706 MP: Mobile Phone

▷ [예외 사례] 시간 12시 50분 → 12:50 축구경기성적 한국:일본 → 2:5

■ 도량형

- 관광유도표지에서 차량 또는 보행자에게 소요거리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할 때 소수점 이하 숫자는 80% 정도로 작게 표기한다.

2.5 km	2.5 km
소수점 이하 숫자를 100%로 표기	소수점 이하 숫자를 80%로 표기

- 관광안내표지에서 거리를 표기할 때 숫자와 단위 사이를 한 단위 띄어쓰기로 한다.

▷ 예: 불국사 3km (×)
 불국사 3 km (○)



<국내 사례>

<국외 사례>

- 관광유도표지에서 소요거리를 표기할 때 백 단위 이하는 미터로 표기하고, 천 단위 이상은 킬로미터로 표기한다.

▷ 예: 고씨동굴 990 m
 고씨동굴 2 km

2 공공안내 그림표지

2-1 기본원칙

- 공공안내 그림표지는 언어, 관습, 문화, 국가 등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국제 그림문자로서, 의미하는 내용이 누구에게나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제정·고시한 공공안내 그림표지 (KSA 0901)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 ▷ 국가표준종합정보센터 (<http://standard.ats.go.kr>) 및 한국표준협회 (<http://www.ksa.or.kr>) 참조
- KSA 0901에 고시된 공공안내 그림표지가 없을 경우, 임의로 만든 공공안내 그림표지 사용을 지양하고, 공공기관이 정한 공공안내 그림표지 또는 국제표준기구 (ISO)에서 정해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공공안내 그림표지를 사용한다.

2-2 사용방법

- 안내할 문안과 공공안내 그림표지가 일치되게 사용하여야 한다.
- 신규로 공공안내 그림표지를 제작해야만 할 경우에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림표지여야 한다.
 - ▷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표지의 오른쪽 또는 아래에 문자로 표기해야 한다.
- 공공안내 그림표지의 크기는 한글의 세로 높이보다 1.5~2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²⁾
- 공공안내 그림표지는 그 수량이 많게 되면 오히려 시인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필요한 공공안내 그림표지에 한해 사용한다.

2) <도로표지규정>에서는 방향표지, 방향예고표지, 유도표지의 경우 한글 세로높이의 1.5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출처: 도로표지규정집, 2006. p. 216).

- 공공안내 그림표지는 패널 위에 표시되므로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적절한 색상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
 - ▷ 바탕색과 공공안내 그림표지의 색상 대비효과가 적을 경우에는 인지 편리성을 위해 공공안내 그림표지에 테두리를 사용한다.
- 현재 국가표준 공공안내 그림표지 (KSA 0901)는 총 300종으로 이중 공공시설, 스포츠시설, 금지 등의 순으로 개발되어 있음

[KSA 0901 공공안내 그림표지 개발현황 (2009년 1월 현재)]

구분	세부 구분	물량	비율 (%)
공공시설	공공시설	84	28.0
	교통시설	29	9.7
	상업시설	21	7.0
	관광문화시설	33	1.0
	스포츠시설	42	14.0
	소계	209	69.7
안전·금지	안전유도	4	1.3
	화재 안전·긴급	6	2.0
	금지	39	13.0
	경고·주의	27	9.0
	지시	15	5.0
	소계	91	30.3
합계		300	100.0

[공공안내 그림표지의 종류와 용례 사례]

구분	공공안내 그림표지	용어
공공시설		왼쪽으로
"		오른쪽 아래로
"		계단 (상향)
"		계단 (하향)
"		입구

구분	공공안내 그림표지	용어
"		출구
"		관광안내소
"		경찰
"		남여화장실
"		남자 화장실
"		여자 화장실
"		장애인용
"		물 마시는 곳
"		음료수
"		예약
"		분실물 보관소
"		표시는 곳
"		표 확인
"		임시 보관소
"		대기실
"		만남의 장소
"		흡연
"		우체국
"		전화

3 디자인

3-1 종합관광안내표지

가. 레이아웃

- 표지판 (패널)의 상단 중앙이나 좌측에 표지의 타이틀을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표지판 (패널)의 가운데 부분에 지도를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종합관광안내표지 레이아웃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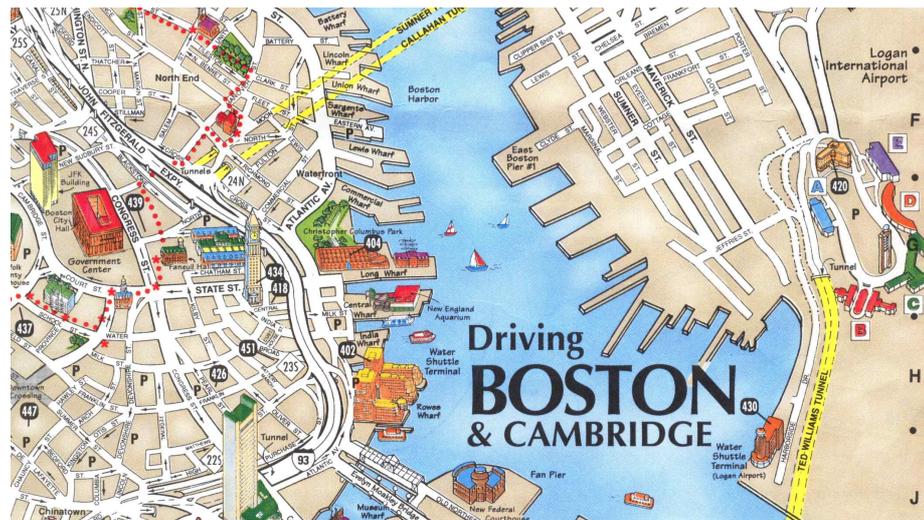
- 범례는 지도 안의 우측 또는 하단에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 단, 범례가 지도내의 정보를 가릴 경우 적당한 공간으로 옮길 수 있다.
- 색인은 하단 중앙이나 하단 우측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 ▷ 단, 색인이 지도내의 정보를 가릴 경우 적당한 공간으로 옮길 수 있다.

- 방위 표시는 안내정보를 가리지 않는 적당한 곳에 배치할 수 있으나 눈에 잘 띌 수 있는 위치여야 한다.



<방위 배치 사례>

- 문자와 공공안내 그림표지, 범례, 색인, 일러스트, 사진 등을 배치함에 있어 지도의 형태를 과도하게 침범하지 않도록 한다. 길 이름을 표시할 경우 길 위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문자가 길이나 건물을 가리지 않도록 세심히 주의한 사례>

나. 지도

- 광역관광안내표지와 시군구관광안내표지의 지도는 평면형 또는 혼합형으로 제작하는 것을 권장한다.
- 관광지안내표지는 입체형 또는 혼합형으로 제작하는 것을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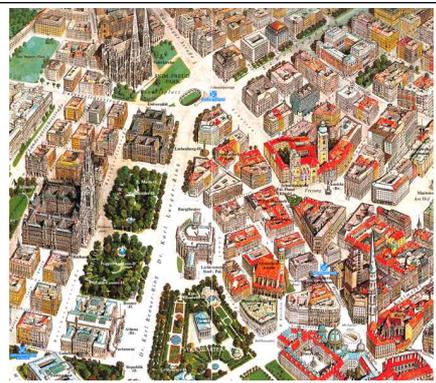
[권장 지도제작형태]

구분	세분류	권장 지도형태
종합관광안내표지	광역관광안내표지	평면형 또는 혼합형
	시군구관광안내표지	평면형 또는 혼합형
	관광지안내표지	입체형 또는 혼합형

- 평면형 지도란, 행정지도와 같이 지형·지물을 평면 형태로 제작한 지도를 말함
- 입체형 지도란, 3D와 같이 지형·지물을 입체 형태로 제작한 지도를 말함
- 혼합형 지도란, 지형은 평면형, 지물은 입체형으로 제작한 지도를 말함
- ※ 입체형 지도는 이용자에게 흥미성을 제공하는데 유리하나, 평면형·혼합형에 비해 정확한 제작이 다소 어려운 단점이 있음



[예] 평면형 안내지도



[예] 입체형 안내지도



[예] 혼합형 안내지도

<지도의 형태: 평면형, 입체형, 혼합형>

- 관광안내표지와 관광안내홍보물에 사용되는 지도는 표준화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 현재위치

- 이용자가 현재위치 (You are here)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색상 (예: 적색)과 형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내외국인 관광객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재위치 문안을 다국어로 표기하는 것을 권장한다.

▷ 한글 표기: 현재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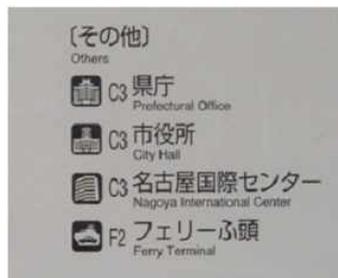
▷ 영어 표기: 'You are here'로 표기한다. 여백이 부족할 경우 'Here'로 줄여서 표기할 수 있다.



<현재위치를 다국어로 표기한 사례>

라. 범례

- 범례는 공공안내 그림표지, 상징기호에 대해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한다.
- 지도에서 관광지, 교통시설, 도로, 산, 절 등 안내할 대상에 공공안내 그림표지나 상징기호를 표시한 경우에는 범례에서 각각의 공공안내 그림표지나 상징기호의 명칭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표시할 공간이 부족할 경우 범례와 색인을 통합할 수 있다.



<범례와 색인 통합 사례>

마. 색인 (인덱스)

- 색인은 이용자가 목적물의 위치정보를 빨리 습득하게 하고, 지도를 간소화하기 위해 사용한다.
- 색인은 국어의 사전 순, 건물 번호 순을 기준으로 하는 등 제작 및 설치 주체가 결정할 수 있다.



<건물 번호를 기준으로 색인을 표시한 사례>

- 색인에는 좌표 값과 해당 시설·자원의 명칭을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 예시

관광안내소가 가로 E, 세로 4에 위치할 경우 'E4 관광안내소'로 표시



<좌표값을 표시하고 있는 종합관광안내표지 사례>

- 이용자의 인지 편리성을 위해 안내대상 지역이나 시설을 각기 다른 색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여백이 있을 시 관광지·시설의 연락처를 병기할 수 있다.

바. 방위

- 방위는 관광객이 방향을 인지하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한다.
- 광역관광안내표지와 시군구관광안내표지의 방위는 북쪽이 항상 위로 향하도록 제작하고, 관광지안내표지의 방위는 이용자의 시선 방향과 일치되도록 제작한다.

[종합관광안내표지의 방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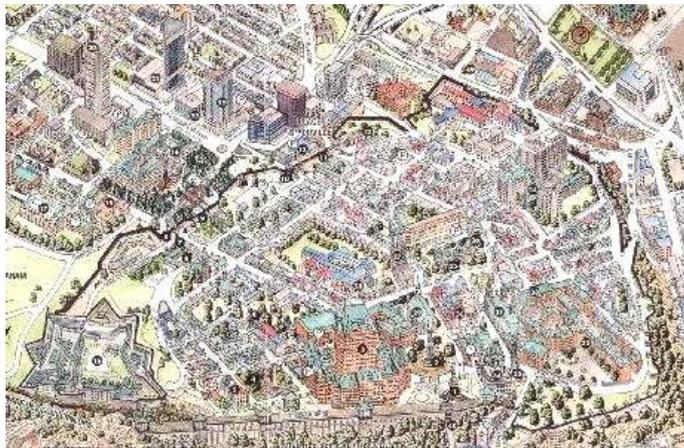
	구분	방위
종합관광안내표지	광역관광안내표지	북 (N)이 위로 향하게 제작
	시군구관광안내표지	북 (N)이 위로 향하게 제작
	관광지안내표지	그 위치에서 바라보는 이용자의 시선방향과 일치되도록 제작

사. 도로

- 대로와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도로 번호 및 명칭을 표기한다.
- 관광객의 이용 빈도가 낮은 도로이거나 중요하지 않은 도로는 생략한다.
- 도로명칭은 한글과 영어로 병기한다.
- 국도, 지방도 등 도로 성격별로 별도 색상을 지정하여 표현할 수 있다.
 - ▷ 별도의 색상을 지정할 경우 이를 범례에서 안내한다.

아. 경계선

- 이용자가 많이 찾는 지역이나 시설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별도의 색상 또는 선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 관광코스를 안내할 경우 지도에 별도의 선을 지정하여 표현할 수 있다.
 - ▷ 이 때 선의 색상 가지 수를 최소화하여 사용한다.



<경계선 사용 사례>

자. 사진·일러스트·기호

- 관광지·관광시설·관광자원에 어울리는 느낌과 이미지를 제공해주는 사진·일러스트·기호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 종합관광안내표지 중 관광지안내표지에서 노약자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입구,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을 알려주어야 할 때는 공공안내 그림표지, 화살표, 기호 등을 사용한다.



<건물입구, 화장실 등을 공공안내 그림표지로 안내하는 사례>

차. 축척·이동 소요거리 또는 소요시간

- 종합관광안내표지에 축척을 표기할 때는 지도의 표시면적을 고려하여 축척 단위를 적절히 선택한다.
- 축척 표기가 어려운 입체형 지도는 주요 지점 간 이동 거리나 소요시간을 알 수 있는 적절한 표시를 하는 것을 권장한다.
- 도보관광 중심의 코스를 안내할 경우 보행 한계를 고려하여 왕복 1,000~3,000 m 범위로 안내하며, 단거리 중심의 거리 정보 또는 보행 시 소요시간을 표시한다.

카. 서체

- 제목 표기는 고딕 계열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문장 표기 시 명조 계열의 서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장소에 따라 적절한 서체를 사용한다.
 - ▷ 한글 서체 예시: 산돌고딕, 한길체, 윤고딕 등
 - ▷ 영어 서체 예시: Helvetica, Arial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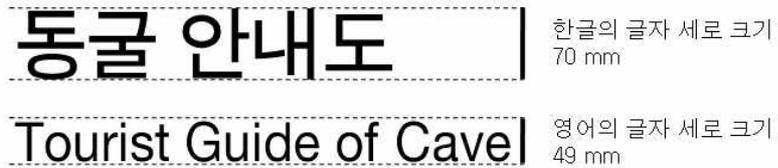
※ 설치 장소의 특성을 고려하되, 가독성이 우수한 서체를 사용하도록 한다.
(예: 도로변에 관광안내표지 설치시 산돌고딕, Helvetica)

-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경우에는 서체 수를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다국어로 표기할 경우 병기하는 외국어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서체를 사용한다.

타. 글자 크기

- 표지판 (패널)의 크기·색상·가시거리에 따라 적합한 글자크기를 사용한다.
- 제목 글자의 크기는 적정 가시거리 (10~20 m)에서 읽기 쉬운 크기로 결정한다. 이 때 한글은 받침이 있는 글자 중 가장 높은 글자를 기준으로 하며, 영어의 경우는 첫 번째 대문자, 일어와 중국어는 첫 번째 문자를 기준으로 한다.

- 영어의 글자크기는 한글 세로크기의 70%, 일어와 중국어는 한글 세로크기의 80% 수준으로 키울 수 있다.
 - ▷ 한글의 제목 글자 크기 사례: 70 mm
 - ▷ 영어의 제목 글자 크기 사례: 49 mm
 - ▷ 일어·중국어의 제목 글자 크기 사례: 56 mm



<종합관광안내표지 제목 글자의 세로 크기 사례>

- 본문 글자의 크기는 가시거리 1~2 m 내에서 읽기 쉬운 크기로 결정한다.
 - ▷ 한글의 본문 글자 크기 사례: 10 mm 이상
 - ▷ 외국어의 본문 글자 크기 사례: 8 mm 이상

[일본의 안내표지 글자 크기 가이드라인 사례]

가독 거리	일문 높이	영문 높이
30m	120mm 이상	90mm 이상
20m	80mm 이상	60mm 이상
10m	40mm 이상	30mm 이상
4 ~ 5m	20mm 이상	15mm 이상
1 ~ 2m	9mm 이상	7mm 이상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 관광활성화 가이드라인. 2005.

파. 간격 및 장평

■ 한글

- 자간보다는 단어 간격이, 단어 간격보다는 행 간격이 더 크게 하는 것을 권장한다.
 - ▷ 글자와 글자 간격 사례: 글자 세로길이의 0.2배
 - ▷ 단어와 단어 간격 사례: 글자 세로길이의 0.3배
 - ▷ 행과 행 간격 사례: 글자 세로 길이의 0.4배 ~ 0.5배 이하
- 글자의 간격은 글자 크기 또는 글자 수량에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표기해야 한다.
- 장평의 경우 글자의 가로와 세로 크기가 동일한 정체보다 세로는 100%로 하되 가로 크기를 85~95% 범위 내에서 표기하는 장체로 한다.

<p>현 대 박 물 관 부 두 순 천 만 총 합 버 스 터 미 널</p>	<p>현대박물관 부두 순천만 종합버스터미널</p>
<p>불균등한 비율로 표기한 사례</p>	<p>장평 95, 자간 10의 균등한 비율로 표기한 사례</p>

■ 영어

- 자간보다는 단어 간격이, 단어 간격보다는 행 간격이 더 크게 하는 것을 권장한다.
 - ▷ 글자와 글자 간격 사례: 소문자 [o] 폭의 0.2배 이하
 - ▷ 단어와 단어 간격 사례: 소문자 [o] 폭의 0.3배 이하
 - ▷ 행과 행 간격 사례: 소문자 [o] 폭의 0.4배 ~ 0.5배 이하

하. 색상

- 프레임과 지주의 색상은 해당 지역 또는 관광지의 환경을 고려하여, 미학적인 색상을 사용한다.
- 바탕색과 문자, 기호, 공공안내 그림표지가 색상대비 되도록 함으로써 정보가 잘 보이도록 한다.
- 고령자와 색맹 또는 색약자를 배려하여 청색 바탕·흑색 글자, 노란색 바탕·흰색 글자의 조합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 관광유도표지

가. 레이아웃

■ 도로변 지주형 표지

- 도로변에 관광유도표지를 설치할 경우 <도로표지규정>을 준용한다.
- 고속도로·국도·지방도·자동차전용도로에서 관광지·관광시설로 유도하기 위해 설치하는 관광유도표지는 지주형태로 설치하며, 레이아웃은 <도로표지규정>의 규격을 준용한다.
 - ▷ <도로표지규정>에 의한 관광지표지의 레이아웃을 준용하되, 가급적 화살표는 길 방향으로 최대한 가까운 곳에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 관광지표지는 양면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이 때 앞면과 뒷면의 레이아웃은 동일하다.

[관광지표지의 레이아웃]

표지번호 및 명칭	406 관광지표지
규격 상세	
레이아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지표지의 화살표는 필요에 따라 하단부에 위치하여 좌우로 표기할 수 있으며 한자는 한글의 우측에 배치할 수 있다. • 또한, 관광지까지의 이점거리도 표기할 수 있다. • 일면 또는 양면으로 설치한다.

- 보행인표지는 좌측에 공공안내 그림표지, 우측에 안내문자를 배치한다.

표지번호 및 명칭	411 보행인표지
규격 상세	
레이아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왼쪽부터 pictogram, 안내문자로 구성

- 일반적으로 문자정보가 차지하는 범위는 표지 (패널) 가로 넓이의 75%, 세로 높이의 65%로 하는 것이 기준이다.
- 하나의 표지 (패널) 안에 2개 이상의 지명이나 시설을 안내할 경우 위는 원거리, 아래는 근거리 순서로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 보행로변 화살깃형 표지

- 보행로에 설치하는 화살깃형 표지는 안내하고자 하는 길과 나란한 방향이 되도록 표지판 (판넬)의 방향을 조정하여 설치한다.



<안내하는 길 방향과 나란히 설치한 화살깃형 표지 사례>

- 화살표는 표지가 가리키는 길로부터 가장 가까운 자리에 배치시키고, 그 다음에 공공안내 그림표지, 문자 순서로 배치한다.
 - ▷ 지주를 기준으로 왼쪽 길을 가리킬 경우: 화살표 (소요거리 포함), 공공안내 그림표지, 문자 순서로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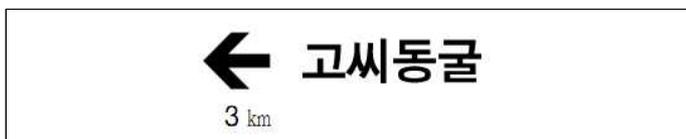


- ▷ 지주를 기준으로 오른쪽 길을 가리킬 경우: 문자, 공공안내 그림표지, 화살표 (소요거리 포함)



<보행로변 화살깃형 표지의 레이아웃 및 정렬 사례>

- 소요거리를 표시할 때에는 화살표의 아래나 옆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보행로에 설치하는 화살깃형 관광유도표지는 양면 이용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양면으로 제작하는 것을 권장한다.



<앞면과 뒷면 모두 이용하고 있는 표지 사례>

- 문자정보가 차지하는 범위는 표지 (패널) 가로 넓이의 75%, 세로 높이의 65%로 하는 것이 기준이다.

■ 스탠드형, 부착형, 돌출형, 천정행거형 관광유도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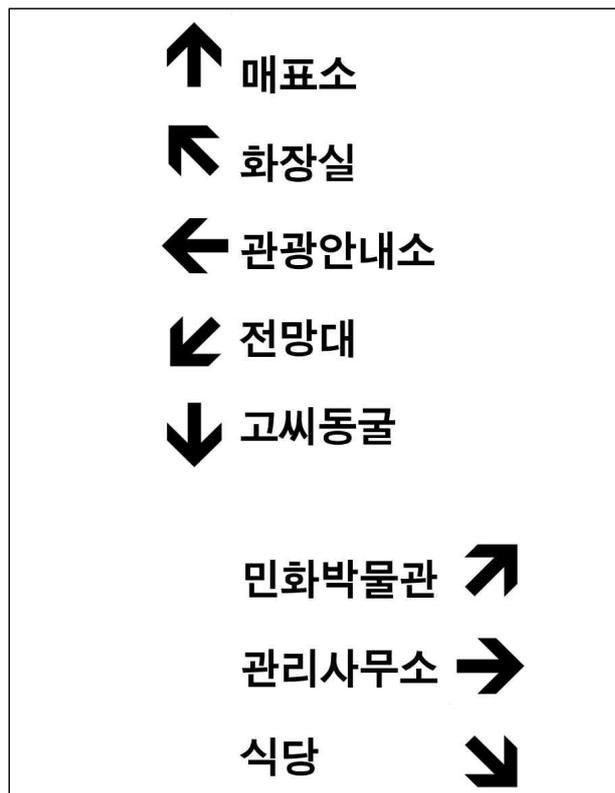
- 이용자가 그림정보를 먼저 인지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 ▷ 화살표는 길에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시키고, 화살표에 이어 공공안내 그림표지, 안내문자 순으로 배열한다.





<길 방향에 따라 화살표, 공공안내 그림표지, 안내문자를 정렬한 사례>

- 다수의 방향표시를 할 경우 방향에 맞추어 왼쪽과 오른쪽에 화살표를 배치한다.



<화살표의 좌우 배치 원칙>

- 2개 이상 정보를 안내할 경우 위쪽은 원거리, 아래쪽은 근거리 순으로 안내문자를 배열한다.
- 스탠드형 표지는 뒷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면으로 제작하는 것을 권장하며, 앞면과 뒷면의 레이아웃은 동일하다.

나. 서체

- 고딕 계열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장소에 따라 적절한 서체를 사용한다.

▷ 한글 서체 예시: 산돌고딕, 한길체, 윤고딕 등

▷ 영어 서체 예시: Helvetica, Arial 등

※ 설치 장소의 특성을 고려하되, 가독성이 우수한 서체를 사용하도록 한다.
(예: 도로변에 관광안내표지 설치시 산돌고딕, Helvetica)

-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경우에는 서체 수를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다국어 병기 시 외국어간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서체를 사용한다.

다. 글자 크기

- 표지판 (패널)의 크기·색상·가시거리에 따라 적합한 글자크기를 사용한다.

▷ 국도·지방도 등 도로변에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관광지표지는 <도로표지규정집>의 글자 크기 원칙을 준수한다. (한글의 크기 사례: 250 mm)

- 제목 글자의 크기는 적정 가시거리 (10~20 m)에서 읽기 쉬운 크기로 결정한다. 이 때 한글은 받침이 있는 글자 중 가장 높은 글자를 기준으로 하며, 영어의 경우는 첫 번째 대문자, 일어와 중국어는 첫 번째 문자를 기준으로 한다.

- 영어의 글자크기는 한글 세로크기의 70%, 일어와 중국어는 한글 세로크기의 80% 수준으로 키울 수 있다.

▷ 한글의 제목 글자 크기 사례: 70 mm

▷ 영어의 제목 글자 크기 사례: 49 mm

▷ 일어·중국어의 제목 글자 크기 사례: 56 mm

고씨동굴 | 한글의 글자 세로 크기 70 mm

Gossi Cave | 영어의 글자 세로 크기 49 mm

<관광유도표지 제목 글자의 세로 크기 사례>

라. 간격 및 장평

■ 한글

- 자간보다는 단어 간격이, 단어 간격보다는 행 간격이 더 크게 하는 것을 권장한다.
 - ▷ 글자와 글자 간격 사례: 글자 세로길이의 0.2배
 - ▷ 단어와 단어 간격 사례: 글자 세로길이의 0.3배
 - ▷ 행과 행 간격 사례: 글자 세로 길이의 0.4배 ~ 0.5배 이하
- 글자의 간격은 글자 크기 또는 글자 수량에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표기해야 한다.
- 장평의 경우 글자의 가로와 세로 크기가 동일한 정체보다 세로는 100%로 하되 가로 크기를 85~95% 범위 내에서 표기하는 장체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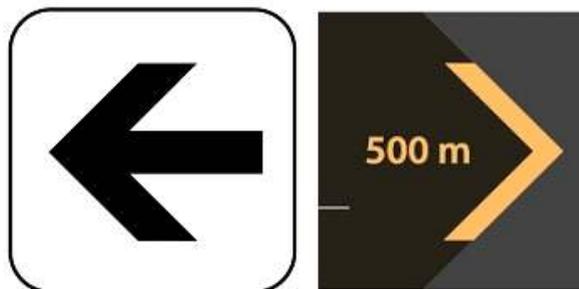
현 대 박 물 관 부 두 순 천 만 종 합 버 스 터 미 널	현대박물관 부두 순천만 종합버스터미널
불균등한 비율로 표기한 사례	장평 95, 자간 10의 균등한 비율로 표기한 사례

Ⅰ 영어

- 자간보다는 단어 간격이, 단어 간격보다는 행 간격이 더 크게 하는 것을 권장한다.
 - ▷ 글자와 글자 간격 사례: 소문자 [o] 폭의 0.2배 이하
 - ▷ 단어와 단어 간격 사례: 소문자 [o] 폭의 0.3배 이하
 - ▷ 행과 행 간격 사례: 소문자 [o] 폭의 0.4배 ~ 0.5배 이하

마. 화살표 모양

-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에서 정한 KSA 0901의 화살표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단, 소요거리를 표시해야 하나 여백이 부족할 경우 이용자에게 인지상 오해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살표의 대를 생략할 수 있다.



<KSA 0901의 화살표 규격>

<화살표 대 생략>

바. 색상

- 프레임과 지주의 색상은 해당 지역 또는 관광지의 환경을 고려하여 미학적인 색상을 사용한다.
 - ▷ 단, 고속도로·국도·지방도·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하는 관광유도표지는 <도로표지규정>을 준용하여 갈색 바탕에 흰색 글자를 사용한다. 3)
- 바탕색과 문자·기호·공공안내 그림표지가 색상대비 되도록 함으로써 정보가 잘 보이도록 한다.

3) 국토해양부, 도로표지규정집, 2006. p. 14.

- 고령자와 색맹 및 색약자를 배려하여 청색 바탕·흑색 글자, 노란색 바탕·흰색 글자의 조합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3 관광명칭표지

가. 레이아웃

- 안내문자와 공공안내 그림표지, 사진, 일러스트 등을 표지판 (패널) 내부에서 사용할 때 가로 형태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단, 설치장소의 협소 등의 사유가 있을 시 세로 형태로 배치할 수 있다.



<원칙: 가로 표기>



<제한적 허용: 세로 표기>



<관광명칭표지의 레이아웃 사례: 캐나다, 이태리>

나. 서체

- 고딕 계열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장소에 따라 적절한 서체를 사용한다.

▷ 한글 서체 예시: 산돌고딕, 한길체, 윤고딕 등

▷ 영어 서체 예시: Helvetica, Arial 등

※ 설치 장소의 특성을 고려하되, 가독성이 우수한 서체를 사용하도록 한다.

-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경우에는 서체 수를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국어로 병기 시 외국어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서체를 사용한다.

다. 글자 크기

- 표지판 (패널)의 크기·색상·가시거리에 따라 적합한 글자크기를 사용한다.
- 제목 글자의 크기는 적정 가시거리 (10~20 m)에서 읽기 쉬운 크기로 결정한다. 이 때 한글은 받침이 있는 글자 중 가장 높은 글자를 기준으로 하며, 영어의 경우는 첫 번째 대문자, 일어와 중국어는 첫 번째 문자를 기준으로 한다.

- 영어의 글자크기는 한글 세로크기의 70%, 일어와 중국어는 한글 세로크기의 80% 수준으로 키울 수 있다.

▷ 한글의 제목 글자 크기 사례: 70 mm

▷ 영어의 제목 글자 크기 사례: 49 mm

▷ 일어·중국어의 제목 글자 크기 사례: 56 mm

고씨동굴 | 한글의 글자 세로 크기 70 mm

Gossi Cave | 영어의 글자 세로 크기 49 mm

<관광명칭표지 제목 글자의 세로 크기 사례>

라. 간격 및 장평

- 한글 글자의 간격은 글자 크기 또는 글자 수량에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표기해야 한다.
- 장평의 경우 글자의 가로와 세로 크기가 동일한 정체보다 세로는 100%로 하되 가로 크기를 85~95% 범위 내에서 표기하는 장체로 한다.

현 대 박 물 관 부 두 순 천 만 총 합 버 스 터 미 널	현대박물관 부두 순천만 종합버스터미널
불균등한 비율로 표기한 사례	장평 95, 자간 10의 균등한 비율로 표기한 사례

마. 색상

- 프레임과 지주의 색상은 해당 지역 또는 관광지의 환경을 고려하여, 미학적인 색상을 사용한다.
- 바탕색과 문자·기호·공공안내 그림표지가 색상대비 되도록 함으로써 정보가 잘 보이도록 한다.
- 고령자와 색맹 및 색약자를 배려하여 청색 바탕·흑색 글자, 노란색 바탕·흰색 글자의 조합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4 관광해설표지

가. 레이아웃

- 설명문은 표지 (패널)의 중앙에 배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단, 이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사진, 일러스트, 도표 등을 사용할 경우 레이아웃은 다소 변경될 수 있다.

- 표지 (패널)의 상단부분에 해설하고자 하는 표지 타이틀 또는 안내하고자 하는 지점의 명칭을 배치할 수 있다.
- 표지 (패널)의 하단부분은 관광정보에 대한 문의 연락처와 관리기관의 연락처를 배치할 수 있다.
- 해설안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장애인을 위한 점자판, 음성 안내장치, IT 전자형 안내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사진, 일러스트, 그림을 이용해 시각적으로 안내하는 관광해설표지 사례>

나. 서체

- 제목 표기는 고딕 계열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긴 문장 표기시 명조 계열의 서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장소에 따라 적절한 서체를 사용한다.
 - ▷ 한글 서체 예시: 산돌고딕, 한길체, 윤고딕 등
 - ▷ 영어 서체 예시: Helvetica, Arial 등

※ 설치 장소의 특성을 고려하되, 가독성이 우수한 서체를 사용하도록 한다.

-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경우에는 서체 수를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다국어 병기 시 외국어는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서체를 사용한다.

다. 글자 크기

- 표지판 (패널)의 크기·색상·가시거리에 따라 적합한 글자크기를 사용한다.
- 제목 글자의 크기는 적정 가시거리 (10~20 m)에서 읽기 쉬운 크기로 결정한다. 이 때 한글은 받침이 있는 글자 중 가장 높은 글자를 기준으로 하며, 영어의 경우는 첫 번째 대문자, 일어와 중국어는 첫 번째 문자를 기준으로 한다.
- 영어의 글자크기는 한글 세로크기의 70%, 일어와 중국어는 한글 세로크기의 80% 수준으로 키울 수 있다.
 - ▷ 한글의 제목 글자 크기 사례: 70 mm
 - ▷ 영어의 제목 글자 크기 사례: 49 mm
 - ▷ 일어·중국어의 제목 글자 크기 사례: 56 mm



<관광해설표지 제목 글자의 세로 크기 사례>

- 본문 글자의 세로 크기는 가시거리 1~2 m 내에서 읽기 쉬운 크기로 결정한다.
 - ▷ 한글의 본문 글자 세로 크기 사례: 10 mm 이상
 - ▷ 외국어의 내용 글자 세로 크기 사례: 8 mm 이상

[일본의 안내표지 글자 크기 가이드라인 사례]

가독 거리	일문 높이	영문 높이
30m	120mm 이상	90mm 이상
20m	80mm 이상	60mm 이상
10m	40mm 이상	30mm 이상
4 ~ 5m	20mm 이상	15mm 이상
1 ~ 2m	9mm 이상	7mm 이상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 관광활성화 가이드라인. 2005.

라. 간격 및 장평

■ 한글

- 자간보다는 단어 간격이, 단어 간격보다는 행 간격이 더 크게 하는 것을 권장한다.
 - ▷ 글자와 글자 간격 사례: 글자 세로길이의 0.2배
 - ▷ 단어와 단어 간격 사례: 글자 세로길이의 0.3배
 - ▷ 행과 행 간격 사례: 글자 세로 길이의 0.4배 ~ 0.5배 이하
- 글자의 간격은 글자 크기 또는 글자 수량에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표기해야 한다.
- 장평의 경우 글자의 가로와 세로 크기가 동일한 정체보다 세로는 100%로 하되 가로 크기를 85~95% 범위 내에서 표기하는 장체로 한다.

현 대 박 물 관 부 두 순 천 만 종 합 버 스 터 미 널	현대박물관 부두 순천만 종합버스터미널
불균등한 비율로 표기한 사례	장평 95, 자간 10의 균등한 비율로 표기한 사례

Ⅰ 영어

- 자간보다는 단어 간격이, 단어 간격보다는 행 간격이 더 크게 하는 것을 권장한다.
 - ▷ 글자와 글자 간격 사례: 소문자 [o] 폭의 0.2배 이하
 - ▷ 단어와 단어 간격 사례: 소문자 [o] 폭의 0.3배 이하
 - ▷ 행과 행 간격 사례: 소문자 [o] 폭의 0.4배 ~ 0.5배 이하

마. 색상

- 프레임과 지주의 색상은 해당 지역 또는 관광지의 환경을 고려하여 미학적인 색상을 사용한다.
- 바탕색과 문자·기호·공공안내 그림표지는 서로 색상대비가 되도록 함으로써 정보가 잘 보이도록 한다.
- 고령자와 색맹 및 색약자를 배려하여 청색 바탕·흑색 글자, 노란색 바탕·흰색 글자의 조합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5 기타표지

가. 레이아웃

- 기타표지는 명확한 안내를 위해 안내문자를 반드시 사용하며, 공공안내 그림표지, 사진, 일러스트 사용 시 우선 배치하고, 안내 문자는 다음에 배치한다.



<기타표지 레이아웃 사례>

나. 서체

- 고딕 계열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장소에 따라 적절한 서체를 사용한다.
 - ▷ 한글 서체 예시: 산돌고딕, 한길체, 윤고딕 등
 - ▷ 영어 서체 예시: Helvetica, Arial 등

※ 설치 장소의 특성을 고려하되, 가독성이 우수한 서체를 사용하도록 한다.

-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경우에는 서체 수를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다국어 병기 시 외국어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서체를 사용한다.

다. 글자 크기

- 표지판 (패널)의 크기·색상·가시거리에 따라 적합한 글자크기를 사용한다.
- 제목 글자의 크기는 적정 가시거리 (10~20 m)에서 읽기 쉬운 크기로 결정한다. 이 때 한글은 받침이 있는 글자 중 가장 높은 글자를 기준으로 하며, 영어의 경우는 첫 번째 대문자, 일어와 중국어는 첫 번째 문자를 기준으로 한다.
- 영어의 글자크기는 한글 세로크기의 70%, 일어와 중국어는 한글 세로크기의 80% 수준으로 키울 수 있다.
 - ▷ 한글의 제목 글자 크기 사례: 50 mm
 - ▷ 영어의 제목 글자 크기 사례: 35 mm
 - ▷ 일어·중국어의 제목 글자 크기 사례: 40 mm

진입금지 | 한글의 글자 세로 높이 50 mm

No Entrance | 영어의 글자 세로 높이 35 mm

<기타표지 제목 글자의 세로 크기 사례>

라. 색상

- 프레임과 지주의 색상은 해당 지역 또는 관광지의 환경을 고려하여 미학적인 색상을 사용한다.
- 바탕색과 문자·기호·공공안내 그림표지는 서로 색상대비가 되도록 함으로써 정보가 잘 보이도록 한다.
- 고령자와 색맹 및 색약자를 배려하여 청색 바탕·흑색 글자, 노란색 바탕·흰색 글자의 조합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제작 설치 및 관리

4-1 제작

가. 외관 형태

■ 기본형태

- 관광안내표지를 설치하는 방식은 크게 스탠드형, 지주형, 부착형, 돌출형, 천정 행거형 등으로 나눈다.
 - ▷ 스탠드형: 사인 자체를 노면이나 바닥에 세우는 형태
 - ▷ 지주형: 단주 (1개), 또는 복주 (2개 이상)를 이용해 표지판 (판넬)을 세우는 형태
 - ▷ 부착형: 건물 벽면이나 그 밖의 구조물, 바닥에 부착하는 형태로, 문자 자체를 부착하거나 상자형 또는 패널로 부착할 수 있음
 - ▷ 돌출형: 건물이나 기타 구조물로부터 돌출시켜 설치하는 형태로 집포의 간판 등에서 많이 볼 수 있음
 - ▷ 천정 행거형: 건물의 천정에 매다는 형태

■ 형태변형

- 관광안내표지는 설치 장소의 특성을 반영하고, 통일성 있는 형태로 설치한다.
- 지역 또는 관광지의 독특한 이미지나 정체성, CI 등을 반영시켜 제작할 수 있다.
- 종합관광안내표지와 관광해설표지는 다른 표지에 비해 자세한 문안을 작은 글씨를 통해 제공하는 표지이므로 돌출형과 천정 행거형은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 좋다.

구분	형태				
	스탠드형	지주형	부착형	돌출형	천정 행거형
종합관광안내표지	△	△	△	-	-
관광유도표지	△	△	△	△	△
관광명칭표지	△	△	△	△	△
관광해설표지	△	△	△	-	-
기타표지	△	△	△	△	△

주: △ = 가능



<스탠드형>



<스탠드형>



<지주형>



<지주형 (화살깃형)>



<부착형>



<돌출형>



<천정 행거형>

나. 통합

- 관광안내표지는 보행공간 협소, 표지 난립 우려 등이 있을 시 환경을 배려하여 통합 형태로 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전, 주의, 금지 등을 알리는 기타표지의 경우 단독 설치가 원칙이다.

▷ 예: 종합관광안내표지 + 관광유도표지 통합형
 종합관광안내표지 + 관광명칭표지 통합형

구분	형태				
	종합관광 안내표지	관광유도 표지	관광명칭 표지	관광해설 표지	기타표지
종합관광안내표지		△	△	△	-
관광유도표지	△		△	△	-
관광명칭표지	△	△		△	-
관광해설표지	△	△	△		-
기타표지	-	-	-	-	

주: △ = 선택



<종합관광안내표지와 관광유도표지의 통합형 사례>

다. 조명

- 관광지 내부의 경우 야간 이용자의 편리를 고려하여 조명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라. 유니버설 디자인 및 유비쿼터스 적용

- 관광안내표지는 장애인 및 노약자를 배려하는 점자판, 음성안내장치 등의 안내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또 LED 등 전자정보 형태의 관광안내 장치를 통해 관광안내표지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4-2 설치

가. 설치 장소

- 관광안내표지가 중복 설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광객의 이동 시작점과 도착점, 주요 분기점을 중심으로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형태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관광안내표지 설치장소를 정할 때 식별 용이성, 표지에 대한 장애물 유무, 통행 지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관광안내표지 설치장소는 표지 종류별로 차이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관광안내표지 설치 장소>

- 종합관광안내표지는 해당 지역이나 해당 관광지의 종합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도로나 보행로 상에서 관광의 출발점이나 관광객 집결지에 설치한다.
 - ▷ 종합관광안내표지는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 유니버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단이나 경사로 등에 설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관광유도표지는 관광객에게 방향을 지시하고, 또 이동 중인 관광객에게 이동하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를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하므로 도로와 보행로 상에서 주로 분기점, 분기점과 분기점 사이에 설치한다.
- 관광명칭표지는 안내대상 장소나 시설에 설치한다.
- 관광해설표지는 안내대상 장소나 시설에 설치한다.
- 기타표지는 안전, 위험, 위급, 주의, 금지 등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관광안내표지 설치장소]

구분		설치 장소
종합관광안내표지	광역관광안내표지	• 고속도로 휴게소 • 역, 터미널
	시군구관광안내표지	• 고속도로 휴게소 • 역, 터미널 • 관광지 입구
	관광지안내표지	• 관광지 입구 • 관광지 내부 집결지 (광장, 휴게소, 매표소 등)
관광유도표지	차량유도표지 (도로표지규정에 의한 '관광지표지')	• 국도, 지방도의 접도구역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접속구역
	보행유도표지	• 보행로 분기점 및 동선
관광명칭표지		• 안내대상 장소·시설
관광해설표지		• 안내대상 장소·시설
기타표지		• 안전, 위험, 위급, 주의, 금지 등 필요 지점

- 인도/보행로에 관광안내표지를 설치 시 일반적으로 보행자는 보도 경계석에서 30~45cm의 거리로 떨어지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보다 더 바깥쪽 또는 안쪽에 설치한다.
 - ▷ 단, 자동차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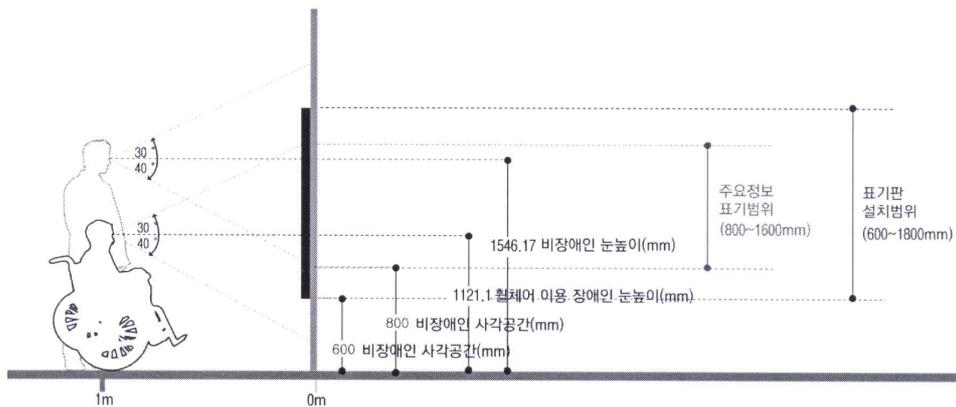
나. 설치 간격

- 관광안내표지는 도로 분기점, 보행로 결절점을 중심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보행유도표지의 경우 분기점과 분기점 사이가 멀 경우에는 그 중간 지점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 이 때 가시거리를 고려하여 약 70~200 m 간격으로 설치할 수 있다.
- 대규모 관광지나 관광시설에서는 종합관광안내표지를 되풀이해 설치할 수 있다.

다. 크기·높이

■ 스탠드형·벽면부착형

- 콘텐츠 중심높이를 80~160 cm가 되게 하고, 표지판 높이는 60~180 cm가 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통상적으로 정상인은 약 80~200 cm 범위, 장애인은 약 30~160 cm 범위가 보기 쉬운 범위이다.



자료: 대한인간공학회. 제5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보고서. 2004.

■ 지주형 및 화살깃형

- 고속도로·국도·지방도·자동차 전용도로 등 도로에 설치하는 관광유도 표지의 높이는 <도로표지규정>을 준용한다.

▷ <도로표지규정>에 의하면, 단주 및 복주식의 경우 표지 하단부가 지상으로부터 200~250 cm, 편지식의 경우 표지 하단부가 지상으로부터 500 cm 높이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도로표지규정의 지주형태별 설치높이]

설치방법	설치도
단주식	<p>(일반도로) (시도) (고속국도)</p>
복주식	<p>(일반도로) (시도) (고속국도)</p>
편지식	<p>500 보도</p>

자료: <도로표지관련규정집> p. 45

- 관광지 내부 등 보행로에 설치하는 관광유도표지는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적합한 높이로 설치한다.
 - ▷ 차량통행이 없는 보행로에 설치 시 보행편리를 위해 표지 (패널) 하단부가 지상으로부터 최소 250 cm 높이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 차량이 통행하는 보행로에 설치시 화물차 높이와 배너 등 설치물의 높이를 고려하여, 표지 (패널) 하단부가 지상으로부터 300 ~ 350 cm 높이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라. 기타 표지

- 주위 환경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설치로 필요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높이와 크기로 적절히 하되, 종합관광안내표지, 관광유도표지, 관광명칭표지, 관광해설표지보다 크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3 유지관리

가. 정보 생성 및 제작

- 지자체 등은 관광안내표지를 관리할 부서를 명확히 정한다. (예: 문화체육관광과)

[관광안내표지 제작·설치·관리자 예시]

구분		제작·설치·관리자
종합관광안내표지	광역관광안내표지	• 특별시도, 광역시도, 민간
	시군구관광안내표지	• 시군구, 민간
	관광지안내표지	• 시군구, 민간
관광유도표지	차량유도표지 (도로표지규정에 의한 '관광지표지')	• 시군구 관할 도로구역일 경우 시군구 • 국도는 도로관리청
	보행유도표지	• 시군구, 민간
관광명칭표지		• 시군구, 민간
관광해설표지		• 시군구, 민간
기타표지		• 시군구, 민간

나. 콘텐츠의 확장·연계·표준화

- 배포용 종이지도와 안내표지에 적용할 지도의 형태를 표준화한다.
- 또 안내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지도의 형태를 확장시켜 사용한다.

다. 정보 관리

- 제작부서와 제작연월을 표기한다 (종합관광안내표지, 관광해설표지에 한한다).
 - ▷ 제작기관은 표지 앞면의 좌우측 하단부 등 적당한 위치에 표기한다.
 - ▷ 안내표지 제작연월은 표지의 범례 하단부에 표기한다.



- 안내표지 디자인 원본 파일은 별도의 CD로 보관한다.

라. 신고

- 지자체 등 관리주체는 관광안내표지의 파괴, 손실, 지장물 발생 등에 대해 신속한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이 때 지자체나 관광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근 관광안내소 근무 안내원을 활용하는 등 필요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마. 청소 및 유지보수

- 관리주체는 관광안내표지의 청결한 관리에 힘쓴다.
- 관리주체는 관광안내표지가 노후, 탈색, 훼손 등으로 미관을 저해하거나 원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 관리주체는 관광안내표지의 상태를 조사하여 유지관리가 불량한 경우에는 피승인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피승인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승인취소, 철거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바. 기록유지

- 관리주체는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광안내시설물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관리주체는 본 규정에 의거 관광안내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광안내표지 관리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록유지를 하여야 한다.

사. 관리대장 관리

- 관리주체는 관광안내표지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할 수 있다.
 - ▷ 단, 전자 데이터 형태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관리대장이 있을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아. 경과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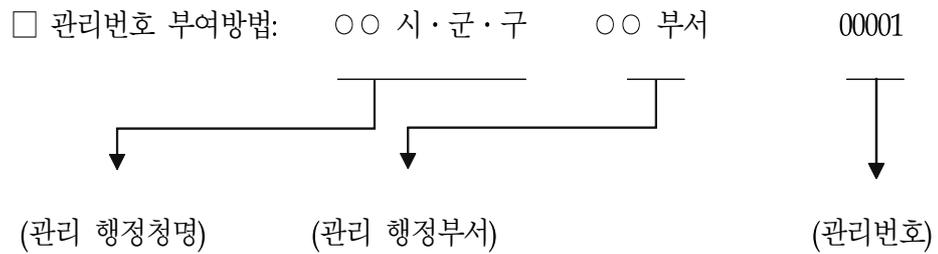
- 이 규정의 시행 전에 이미 설치·승인된 관광안내표지는 이 규정에 의한 관광안내표지로 본다.
- 관리주체는 승인기간이 만료되어 재승인시에는 본 규정에 의거 설치·승인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 홍보 실시

-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은 관광안내표지 가이드라인 및 표준 모델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차. 설치·관리 절차

- 관광안내표지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치주체는 관리부서 담당자와 동행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유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후 설치할 수 있다.
- 관리주체는 관광안내표지 설치 시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피승인자로 하여금 당해 표지판의 측면 또는 뒷면 또는 앞면 하단부 등 적절한 위치에 관리사항을 명시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 표기방법은 흰색바탕에 검정글씨로 아래 예시한 것처럼 관리사항을 표기하여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관리기관	○○시군구-○○○부서
관리번호	○○시군구 - ○○○부서 - ○○○○1
명칭	○○시군구 관광안내도
설치일자	2008. 01. 01.
연락처	02-555-5555

- 설치방법은 도료를 사용하여 표기하거나 라벨 등 별도의 재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 크기는 가로 20 cm, 세로 15 cm를 표준으로 하고 표지판의 종류 및 규격 등에 따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

III. 부록

1 KSA 0901 공공안내 그림표지

구분	공공안내 그림표지	용어	구분	공공안내 그림표지	용어
공공시설		왼쪽으로	공공시설		엘리베이터
"		오른쪽으로	"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		위로	"		에스컬레이터
"		아래로	"		이동 보도
"		왼쪽 위로	"		난간을 잡으시오
"		오른쪽 위로	"		장애인용 경사로
"		왼쪽 아래로	"		장애인용 리프트
"		오른쪽 아래로	"		옷 보관실
"		계단 (상향)	"		남자 탈의실
"		계단 (하향)	"		여자 탈의실
"		입구	"		샤워
"		출구	"		목욕
"		안내소	"		세면장
"		관광 안내소	"		비누
"		경찰	"		손 건조기
"		화장실	"		종이 수건

구분	공공안내 그림표지	용어	구분	공공안내 그림표지	용어
공공시설		쓰레기통	공공시설		학교/유치원
"		아이를 잡고 타시오	"		학교 (지도용)
"		오른쪽으로 타시오	"		회의실
"		왼쪽으로 타시오	"		정숙
"		줄서기	"		보안 카메라
"		두 줄서기	"		노약자
"		세 줄서기	"		노약자
"		재활용	"		임산부
"		분리수거- 플라스틱류	"		임산부
"		분리 수거- 알루미늄, 고철류	"		유아용 시설
"		분리수거-유리류	"		유모차
"		분리 수거-종이류	"		놀이방
"		인터넷 사용 가능	"		놀이터
"		휴대전화 진동사용	"		어린이 보호
"		사찰	"		미아 보호소
"		교회	"		애완동물을 매시오
"		성당	교통시설		공항
"		기도실	"		헬리포트
"		도서관	"		열차

구분	공공안내 그림표지	용어	구분	공공안내 그림표지	용어
교통시설		고속열차	교통시설		출입국 수속/ 검역/서류심사
"		지하철	"		수화물 찾는 곳
"		지하철 (지도용)	"		수화물 취급
"		배·페리·부두	"		배·페리·부두
"		버스	"		버스
"		트럭	"		트럭
"		택시	"		택시
"		렌터 카	"		렌터카
"		자전거	"		자전거
"		케이블 카	"		케이블 카
"		리프트	"		리프트
"		안전대를 올리시오	"		안전대를 올리시오
"		안전대를 내리시오	"		안전대를 내리시오
"		주차장	"		주차장
"		옥내 주차장	"		옥내 주차장
"		비행기 출발	"		비행기 출발
"		비행기 도착	"		비행기 도착
"		비행기 환승	"		비행기 환승
"		세관	"		세관

구분	공공안내 그림표지	용어	구분	공공안내 그림표지	용어
교통시설		출입국 수속/ 검역/서류심사	상업시설		스낵 코너
"		수화물 찾는 곳	"		자동 판매기
"		수화물 취급	"		약국
"		고속도로	"		주유소
"		일방통행	"		회의 시설
"		차량 정비	"		세탁 서비스
"		안전 벨트	"		이발소
상업시설		(동양) 식당	"		사진 부스
"		(서양) 식당	"		공장/공업 단지
"		찻집	관광문화 시설		공연 극장
"		바	"		영화관
"		숙박 시설/호텔	"		화랑
"		환전	"		전망지
"		환전 (지도용)	"		야영장
"		현금 지급기	"		캐러밴 캐러밴 야영장
"		쇼핑	"		소풍지역
"		쇼핑 (지도용)	"		공원
"		쇼핑 카트	"		휴양림
"		편의점	"		산책로

구분	공공안내 그림표지	용어	구분	공공안내 그림표지	용어
관광문화 시설		놀이시설/테마파크	관광문화 시설		여행사
"		동물원	"		다리
"		동물원 (지도용)	"		댐
"		수족관	"		등대
"		식물원	스포츠 시설		체육시설
"		자연보호구역	"		종합경기장
"		목장	"		육상
"		산	"		필드하키
"		동굴	"		아이스하키
"		폭포	"		역도
"		박물관/미술관	"		유도
"		역사 건축물	"		태권도
"		안마	"		레슬링
"		사우나	"		핸드볼
"		온천/목욕탕	"		펜싱
"		카지노	"		체조
"		나이트클럽	"		양궁
"		노래방	"		씨름
"		수영장 (해수욕장)	"		골프장

구분	공공안내 그림표지	용어	구분	공공안내 그림표지	용어
스포츠 시설		배드민턴	스포츠 시설		탁구
"		농구	"		낚시/낚시터
"		축구	"		급류타기
"		배구	"		수상스키
"		야구	"		다이빙
"		볼링	"		체력 단련장
"		권투	"		하이킹
"		사이클	"		조깅
"		승마	안전 유도		비상구
"		경마장	"		대피소
"		사냥/사격장	"		비상시 깨고 여시오
"		스키	"		의사
"		스키 리프트	"		의무실
"		내리는 곳	화재 안전 긴급		전기화재용 소화기
"		스노보드	"		소화기 (소화전)
"		스케이트	"		소방호스
"		당구	"		소방 경보기
"		스쿼시	"		비상 전화
"		테니스	금지		금연

구분	공공안내 그림표지	용어	구분	공공안내 그림표지	용어
금지		뛰지 마시오	금지		음식물 반입 금지
"		보행자 금지	"		애완동물 금지
"		쓰레기 금지	"		쇼핑 카트 금지
"		휴대전화 사용금지	"		경적 금지
"		전자제품 사용금지	"		담배 금지
"		주차금지	"		수상스키 금지
"		사진촬영 금지	"		다이빙 금지
"		플래쉬 사용 금지	"		수영 금지
"		비디오 카메라 사용금지	"		야영 금지
"		선글라스 착용 금지	"		무기 반입 금지
"		술 반입 금지	"		출입 금지
"		취사 금지	"		관계자 외 출입금지
"		물로 소화하지 마시오	"		손 대지 마시오
"		인라인 스케이트 금지	"		음용 불가
"		키패드 금지	"		화기 엄금
"		메달리지 마시오	"		산업용 차량 금지
"		문에 기대지 마시오	"		조작 금지
"		문이 닫힐 때 뛰어들지 마시오	"		밀지 마시오
"		어린이 금지	"		앞지 마시오

구분	공공안내 그림표지	용어	구분	공공안내 그림표지	용어
경고주의		보행자 주의	경고주의		산업용 차량 주의
"		미끄럼 주의	"		크레인 주의
"		미끄럼 주의 (차량)	"		독극물 주의
"		계단 주의	"		뜨거운 표면 주의
"		틈새 주의	"		인화 물질/고온 경고
"		장애물 주의	"		얕은 수심 주의
"		살얼음 주의	"		방사성 물질 경고
"		추락 주의	"		폭발물 경고
"		머리 위 주의	"		깊은 수심 주의
"		위험/경고	"		급격한 수심변화 주의
"		감전 주의/전기 주의	"		급류 주의
"		부식성 물질 경고	"		높은 파도 주의
"		고압가스 경고	"		맹견 주의
"		회전체 주의			

2 <도로표지규정> 중 관련 규정

2-1 관광지표지

표지번호 및 명칭	406 관광지표지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지표지는 단독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방향표지에 병기할 수 있다. ○ 일면 또는 양면으로 설치하며 주행방향의 오른쪽 길옆에 설치한다. ○ 지방지역의 관광지표지는 당해관광지로부터 반경 10개소 범위내에 있는 주요 진입도로의 교차점 등 적절한 위치에 10개소 이내로 설치하며, 도시지역은 반경 10개소 범위내에 있는 주요 진입도로의 교차점 등 적절한 위치에 10개소 이내로 설치한다. ○ 고속국도의 경우 적절한 위치에 별도의 관광지표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때 관광지표지에는 해당 출구명과 출구번호, 출구까지의 이점거리를 병기할 수 있다. ○ 필요에 따라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로부터 진출하여 다른 도로와 접속되는 적절한 위치에는 해당 지역의 관광지를 안내하는 종합관광지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 관광지표지의 화살표는 필요에 따라 하단부에 위치하여 좌·우로 표기할 수 있으며 한 자는 한글의 우측에 배치할 수 있다. 또한, 관광지까지의 이점거리도 표기할 수 있다.
비고	

- (1) 관광지표지는 단독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변 상황이나 여건을 고려하여 당해 도로관리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향표지에 병기할 수 있다.
- (2) 도로관리청이 관광지표지로 안내할 수 있는 관광지의 범위는 <표 7-1>과 같다.

<표 7-1> 관광지표지의 설치범위

관광지의 종류	도로별 설치구분	
	지방/도시 지역	고속 국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	○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	○	○
자연공원법에 의한 도립공원, 군립공원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와 유네스코에 등록된 세계문화유산	○	
관광진흥법에 의한 제1종종합휴양업으로 지정된 관광시설	○	○
관광진흥법에 의한 제2종종합휴양업으로 지정된 관광시설	○	○

이상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일반관광지는 시설관리주체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득하여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 (3) 당해 도로관리청은 관내의 관광지표지 설치대상 지명 또는 시설명을 규칙 제14조의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 (4) 관광지를 방향표지에 표기할 때는 갈색바탕의 사각형안에 표기하며 단독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광지표지 (표지번호 406) 또는 보행인표지 (표지번호411)의 형식으로 갈색바탕에 표기한다.
- (5) (4)항의 경우 진행방향으로는 도로표지규칙 별표1의 기준에 의거 선정된 지명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좌우회전방향

에는 관광지명을 표기할 수 있다.

(6) 방향표지에 보조표지 형식으로 설치할 경우 도로명 보조표지외에 보조표지판은 하나의 방향표지판에 1개의 보조표지만 설치하며 사설안내표지 설치대상을 보조표지로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7) (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시설명이 규칙제3조에 의해 관광지의 안내기능보다 도로상의 주요지명으로 표기할 경우에는 갈색바탕의 관광지안내표기방법에 의하지 않고, 일반 안내지명의 표기방법과 동일하게 표기하되, 한자병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예: 남대문 등)

(8) 설치위치

- 지방지역도로: 도시지역 밖에 위치한 관광지안내표지는 당해 관광지로부터 반경 10 km 범위내에 있는 주요 진입도로의 교차점 등 적절한 위치에 10개소 이내로 주행방향의 오른쪽 길옆에 설치한다.
- 도시지역도로: 도시지역 안에 위치한 관광지안내표지는 당해 관광지로부터 반경 5 km 범위내에 있는 주요 진입도로의 교차점 등 적절한 위치에 10개소 이내로 주행방향의 오른쪽 길옆에 설치한다.
- 고속국도: 해당 출구의 500 m 전방에 복주식 또는 편지식으로 관광지표지를 설치하며 이 때 관광지명과 해당 출구명 및 출구번호를 병기한다. 고속국도에서 안내할 수 있는 관광지는 해당 출구로부터 반경 15 km 범위 내에 있는 관광지로 한정한다. 여러 관광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3개 이하의 시설을 안내하여야 한다.

(9) 필요에 따라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출구지점의 적정한 위치에 해당 지역의 관광지를 안내하는 종합관광지표지 또는 5개까지 연립으로 관광지표지를 설치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상의 관광지 표지 설치 방법, 비용부담 등의 세부지침은 도로관리청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2 사설안내표지

1. 목적

본 규정은 도로구역내에 설치하는 각종 사설안내표지의 규격,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설안내표지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설안내표지의 정의

사설안내표지는 주요 공공시설, 공용시설 또는 관광·휴양시설 등의 관리주체가 당해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하여 도로구역 내에 설치하는 표지를 말한다.

3.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대상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당해 도로관리청이 다수의 도로이용자를 위한 안내표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표 6-1>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대상

구분	시설의 종류
산업·교통 분야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한 국가·지방산업단지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및 대규모점포 -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공용화물터미널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물류센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 항공법에 의한 공항 -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및 지방항만 - 철도법에 의한 역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 도로법령에 의거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휴게소 (대형승합차 10대이상의 부설주차장을 갖춘 관광휴게시설에 한함)

구분	시설의 종류
관광·휴양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 온천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 - 도시계획법에 의한 유원지 - 도시공원법에 의한 규모 1만 m² 이상의 공원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건축물, 사적지, 명승지 등 관광명소 -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된 관광시설 - 개별법에 근거한 농촌체험마을 등의 체험마을
공공·공용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문화체육시설 (도서관,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등) - 종합사회복지관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 대사관, 영사관 등 주한 외국공관 및 국제기구 -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설묘지·공설화장장·공설납골시설 및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4호의 묘지 -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기관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일반병원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의 사찰, 성당, 교회, 순교기념지로써 당해시설물이 500 m²이상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체육시설 -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 주택법에 의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4. 적용기준 및 적용범위

가. 사설안내표지는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소유자가 당해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되, 도로구역내의 사설안내표지는 이용자의 편의제공 및 교통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극히 제한적으로 설치 허가해야 한다.

- 나. 법 제25조에 의한 도로구역내에서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하고자 할 때 본 규정을 적용한다. 단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없다.
- 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내표지로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표지판의 형태, 도안, 색상, 상징그림 등에 대해 당해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단, 주변 환경 및 교통안전, 미풍양속에 저해되지 않아야 한다.

5. 사설안내표지의 크기

가. 사설안내표지의 크기는 시설물의 종류·특성 및 외래이용객을 위한 부설주차장의 규모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판단에 의해 아래의 기준이하의 규격으로 설치 허가하여야 한다.

- 1,200 mm × 850 mm: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광역시·도, 군·구청)
- 1,200 mm × 550 mm: 사설안내표지판을 단독으로 설치 시
- 1,200 mm × 350 mm: 사설안내표지판을 연립으로 설치하는 경우

나. 글자 수가 비교적 많아서 정해진 규격에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나, 당해 도로관리청이 안내하고자 하는 시설의 특성 및 규모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격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표지판의 가로·세로의 규격을 20% 내외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단,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왕복 4차로 이상의 도로변에 사설 관광지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판단에 따라 표지판의 가로·세로 규격을 50% 범위 내에서 확대할 수 있다.

6. 사설안내표지의 색상 및 조명

- 가. 표지판의 바탕색상은 규칙에 정한 녹색, 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의 색상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색채나 적색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관광시설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관광지표지와 동일한 갈색 바탕의 표지판 (이하 ‘사설관광지표지’라 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나. 지주 및 표지판의 바탕 또는 글씨에 교통안전을 위해 야광 도료나 반사지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단, 관공서 등 공공시설 안내표지 및 사설관광지표지는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 다. 간판의 조명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라. 관공서 등의 공공시설은 흰색바탕에 청색글자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마. 지주는 일반표지의 지주와 동일한 검은 회색 또는 스텐재질을 사용한다.

7. 안내문안 및 도안

- 가. 표지판의 안내문안은 시설(지역)명, 상징마크, 방향 및 거리 이외의 문자를 표기하여서는 안된다.
- 나. 표지판의 도안과 색상은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도로관리청이 미관·풍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가한다.
- 다. 상징마크의 경우 기술표준원에서 고시된 (KSA 0901) 시설관련 상징그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8. 설치장소 및 표시방법

- 가. 사설안내표지의 설치장소는 도로표지의 기능발휘에 방해하지 않도록 선정하고, 특히 보행인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 나. 사설안내표지는 안내하고자 하는 시설의 주요 진입로 (사도 등)와 도로법상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점 주변의 도로변에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 단, 왕복 4차로 이상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도로에서는 교차점 전방 200~250 m 지점의 양측 도로변에 각 1개소의 진입로 예고표지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 다.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사설관광지표지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명소 또는 관광시설로부터 반경 10 km 범위내에서 주요 진입로와 동급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는 지점에 주행방향별로 각 1개소씩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단, 최대 5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도시지역 내에 위치한 사설관광지표지는 당해 관광지로부터 반경 5 km 범위내에 있는 주요 진입도로의 교차점 등 적절한 위치에 5개소 이내로 주행방향의 오른쪽 길옆에 설치한다.

9. 설치방법

- 가. 복주식 또는 편지식으로 복합설치하고, 시가지내에서는 편지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 나. 동일 지역 내에 2개소 이상 시설이 있고 동일 진입로를 이용하는 경우와 동일 장소에 2개 이상의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이 경우 1개의 표지판의 크기는 최소의 규격으로 설치하되 연립표

지 전체의 크기는 주변경관과 지형지물을 감안하여 시설유형별 크기를 당해 도로관리청이 정한다.

다. 지주를 이용하여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한 각종 도로표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1) 건물밀집지역이 아닌 교외부에서는 길어깨 끝단보다 표지의 차도측 끝단이 차도 바깥쪽으로 최소한 50센티미터 이상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2) 보도가 설치된 시가지부에서는 측구를 포함한 포장면 끝단보다 표지의 차도측 끝단이 차도 바깥쪽으로 최소한 20센티미터 이상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3) 표지판의 높이는 표지의 하단부가 노면보다 최소한 2.5 m 이상 높게 설치하여야 한다.
- (4) 1),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도로의 길어깨 폭이 협소한 경우에는 변경하여 설치하되 차량이나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절한 높이를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라. 지주를 이용하지 않는 특수형식의 사설안내표지는 차량이나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절히 설치하여야 한다.

10. 허가대상의 제한

가. 본 규정 제2항에 해당되는 시설로서 공공성, 공익성 및 편리성이 있는 경우로만 제한하며 광고성이 내포되어 있는 사설안내표지는 허가하여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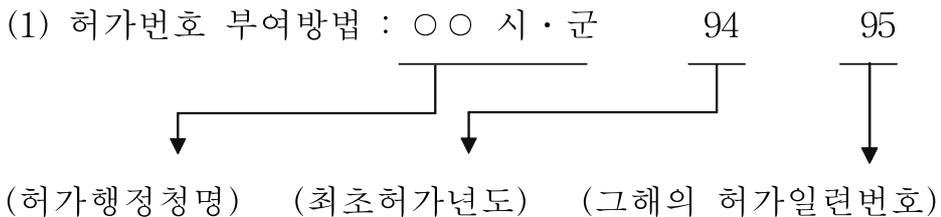
11. 설치허가 절차

도로구역내의 사설안내표지의 설치허가는 법 제22조에 의거 당해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이 하며, 허가절차는 법 제40조의 도로점용허가에 따른다.

12. 허가신청서 처리

- 가. 피허가자는 법 제40조에 의해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당해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도로관리청은 현지를 조사하고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4항에 의거 허가대상 사설안내표지인 경우에만 허가한다.
- 다.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공사에 따른 철거 등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허가내용을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 라. 허가시에는 사설안내표지 허가번호를 부여하고 피허가자로 하여금 당해 표지판의 뒷면 우측(또는 좌측)하단에 허가받은 사항을 명시토록 하여야 한다.



- (2) 표기방법은 흰색바탕에 검정글씨로 <그림 6-1>과 같이 허가사항을 표기하여 육안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한다.
- (3) 설치방법은 도료를 사용하여 표기하거나 라벨 등 별도의 재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 크기는 15 cm × 10 cm를 표준으로 하고 표지판의 크기·높이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그림 6-1> 허가사항 표기방법

허가번호	과천시-00-123
허가기간	'00.10.12~'02.03.25
시 설 명	과천시립도서관
표지규격	1,200 mm × 300 mm
전화번호	02-504-7717

마.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절차에 의거 점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13. 사설안내표지의 관리

가. 사설안내표지판의 관리는 노후, 탈색, 훼손 등 도로변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피허가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나. 사설안내표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도로관리청은 사설안내표지의 상태를 조사하여 유지관리가 불량한 경우에는 피허가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피허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허가취소, 철거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4. 사설안내표지에 대한 기록유지

도로관리청은 본 규정에 의거 관내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사설안내표지대장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5. 도로관리청의 별도 관리지침 운영

- 가. 도로관리청은 관내 도로구역내 사설안내표지의 연립설치가 용이하도록 통일된 지주형태 및 표지판과 지주와의 결합방법 등에 대한 표준 모델을 규정할 수 있다.
- 나. 관내 시설 유형별 통일된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할 경우 적색을 제외한 녹색 및 청색, 또는 오렌지색 등의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도로관리청은 지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벽, 가로등 등의 지주를 활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 다. 도로관리청은 지역 특성에 따라 사설안내표지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허가대상, 설치방법 등에 대하여 추가 제한 규정을 설정하여 허가 할 수 있다.
- 라. 도로관리청은 관내 도로구역 내에 이미 설치된 사설안내표지에 대한 개선 및 정비방안을 지속적으로 수립·관리하여야 한다.

16. 경과조치

- 가. 이 규정의 시행전에 이미 설치 허가된 사설안내표지는 이 규정에 의한 사설안내표지로 본다.
- 나. 도로관리청은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재허가시에는 본 규정에 의거 설치허가 하여야 한다.

한국 관광안내표지 가이드라인

발행일: 2009년 2월

발행인: 오지철

발행처: 한국관광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

담당부서: 관광안내팀(TEL. 02-729-9542~3)

<비매품>